

# 학교법인 건양학원 정관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와 인류사회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취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는 동시에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여 국가동량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건양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건양대학교
2. 건양사이버대학교
3. 건양대학교 병설 건양고등학교(개정:2013.01.25)
4. 건양대학교 병설 건양중학교(개정:2013.01.25.)
5. 건양대학교 부속유치원(신설:2017.06.28.)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전시 서구 관저동로 158에 두며, 분사무소를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 논산시에 둔다.(개정:2014.12.30)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15.03.01)

## 제 2 장 자산과 회계

### 제 1 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 학교법인 건양학원 정관



# 학교법인 건양학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 2 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④ 학교에 속하는 회계중 대학교의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의 회계로 구분한다.

**제9조의2(예산·결산의 공개)**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결산은 당해 학교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 3 절 삭제 (2007.12.26)

**제13조 삭제(2007.12.26)**

**제14조 삭제(2007.12.26)**

**제15조 삭제(2007.12.26)**

**제16조 삭제(2007.12.26)**

**제17조 삭제(2007.12.26)**

## 제 3 장 기 관

### 제 1 절 임 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 8인(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 2인

② 삭제(2007.12.26)

③ 삭제(2007.12.26)

**제18조의2 (상근임원)** ① 제18조의 임원중 이사장과 이사 또는 감사 1~2인을 상근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임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3년(개정: 2016.04.29)

② 이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는 임원의 경우 그 임기는 학교의 장의 임기로 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은 당연직 이사로 할 수 있다.

③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④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⑤ 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제21조의 2(개방이사의 선임)** ① 제18조의 이사 8인 중 2인은 개방형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 이사추천위원회 (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개방형이사 선임 대상자 추천을 요청 할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 할 수 있다.

④ 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여)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⑤ 개방형이사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운영위원회규정, 대학평의원회규정, 임원추천 공동협약의 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의 3(추천감사 선임)** ① 제18조의 감사 2인 중 1인은 추천위원회 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②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1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의 4(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3.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③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 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위임받은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15일 이내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 제 2 절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와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 의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9조(이사회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 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이사회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3 절 대학평의회

**제31조의 2(대학평의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회(이하 평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1조의 3(평의회의 구성)** ① 평의회는 교원, 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등 11명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4명
2. 직원 3명

3. 학생 1명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명

② 평의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평의원의 구성은 각 구성단위의 협의체에서 2배수로 추천받아 학교의장이 위촉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1조의 4(의장 등)** ① 평의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여, 의장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1조의 5 (평의회의 기능)** 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 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의 6(운영규정)** 평의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 4 장 수 익 사 업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 법인설립·출자 등 기타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업
2. 음식업
3. 제조업, 도·소매업

4. 주차장사업
5. 의료사업
6. 제약업,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사업
7. 건강식품·식음료 사업
8. 장례식장 영업
9. 출판 및 인쇄업
10. 학원 운영업
11. 용역업
12. 토건사업
13. 유가증권 및 주식투자
14. 금융업
15. 영림·축산·농장사업
16. 상기 사업관련 부대사업

**제33조(수익사업의 명칭)** ①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경영한다.

1. 건양학원사업본부 대전사업소
2. 건양학원사업본부 논산사업소
3. 건양학원사업본부 서울사업소
4. 건양재단 대전빌딩
5. 건양대학교 부여병원
6. 건양대학교 메디칼센터
7. 건양대학교 부여장례식장
8. 건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9. 가람상사(신설: 2013.08.27)
10. 건양학원사업본부 서천사업소(신설: 2014.04.30)
11. 세화실업 주식회사(신설: 2014.06.30)

② 제1항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연구 및 실험실습에 사용할 수 있다.

**제34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3조의 사업장 주소는 다음과 같다.

1. 건양학원사업본부 대전사업소 :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 685
2. 건양학원사업본부 논산사업소 : 충남 논산시 내동 26
3. 건양학원사업본부 서울사업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159
4. 건양재단 대전빌딩 : 대전시 동구 중동 75-2

5. 건양대학교 부여병원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597-8
6. 건양대학교 메디칼센터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159
7. 건양대학교 부여장례식장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597-20
8. 건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 685
9. 가람상사 :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35-9번지 (신설: 2013.08.27)
10. 건양학원사업본부 서천사업소 : 충남 서천군 서면 서인로 471번길 61-27 (신설: 2014.04.30)
11. 세화실업주식회사 : 충남 논산시 양촌면 인천리 42-3(신설:2014.06.30)

**제35조(관리인)** ① 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관리인과 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사업체의 경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 5 장 해 산

**제3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장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거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38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개정:2015.04.20.)

## 제 6 장 교 직 원

### 제 1 절 교 원

#### 제 1 관 임 용

**제39조(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고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 이외의 대학교 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

1. 교수 : 정년. 단, 신규채용 되는 교수는 1차에 한하여 3년간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2. 부교수·조교수 : 총장이 별도로 정함(개정:2012.06.27)
- ③ 대학교의 부총장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하며 타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제1항 내지 제2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 ⑤ 중·고등학교 교원은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상호 교류 근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학교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 ⑥ 교원의 신규 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전형을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신규 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며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 ⑦ 제1항 및 제2항, 제4항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교원을 임용 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2(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① 대학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1. 근무기간
  -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나.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2.06.27)
2. 급여 :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강의실적·연구실적·논문지도·진료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대학의 장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 ④ 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

**제39조의 3(기간제교원)** ① 교원이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하거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에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할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 기간제교원은 학교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신설:2016.08.30)

**제39조의 4 삭제**(2012.10.20)

**제39조의 5(초빙교원)** ① 대학에 강의와 연구를 위하여 초빙교원을 둔다

② 초빙교원은 학교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39조의 6(교원정원관리)**(신설: 2015.04.20)

①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교원산출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되, 교원 직급별 인원 중 교수의 인원은 전체 전임교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기타 세부사항은 각 기관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40조(정년)** ① 교원의 정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단,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원의 경우 정년연장 요청이 있을 시 이사회의 심의 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0조의 2(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한다. (개정:2016.08.30)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2016.08.30))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될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14.06.30.)
-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신설:2016.08.30)
8. 관찰청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신설:2016.08.30)

**제41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0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0조의 2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0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0조의 2 제5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2016.08.30)
5. 제40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0조의 2 제7호 및 제7호의2에 의한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재직 중 2회에 한하되, 그 기간은 각각 3년 이내로 한다. (개정:2016.08.30)
7. 제40조의 2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42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제40조의 2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3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0조의 2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② 제40조의 2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4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전문개정:2016.08.30)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3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1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5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

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또는 조건부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의 2(명예퇴직)** ① 학교법인 건양학원의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06.30)

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의 3(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7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양대학교, 건양사이버대학교, 건양중·고등학교에 각각 교원인사위원회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건양대학교, 건양사이버대학교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 교육기관의 장이 교수·부교수·조교수를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2012.06.27)
2. 대학교 교육기관의 장이 부총장의 보직발령 제청을 하고자할 때에 그 보직 제청동의에 관한 사항
3. 우수교원 선정에 관한 사항
4. 임상교원의 협력병원 겸직에 관한 사항(개정:2012.08.09)
5. 기타 총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건양 중·고등학교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03.30)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사위원회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의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제49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건양대학교 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15명의 조교수급 이상으로 조직한다. 위원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2012.06.27)

② 건양사이버대학교 인사위원회는 부총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원을 포함하여 7명으로 조직한다.

③ 중·고등학교 인사위원회는 교감을 포함하여 교장이 임명하되 위원은 각 5명으로 한다.

④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제50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1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2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3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4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5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개정:2016.08.30)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건양학원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2016.08.30)

1. 제2항 제2호(외부위원)에 해당하는 사람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한다.
  2. 건양학원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징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단,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2016.08.30)
- ⑤ 외부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른다. (신설:2016.08.30)

**제56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7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교원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8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8조의 2(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 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8조의 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9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 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2016.08.30)

**제60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2016.08.30)

④ 이사장은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0조의 2(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2016.08.30)

**제61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

하여야 한다.

**제61조의 2(징계사유 시효)**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2016.08.30)

1. 급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3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 3 절 학교교육분쟁 조정위원회

**제64조(학교교육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교원예우에 관한규정」(이하 “영”이라한다.) 제6조 제4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중·고등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 한다.

**제65조(학교교육분쟁 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학교교육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 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사단법인 충청남도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보상액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6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8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 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회의에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인 당사자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이나 유선,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70조(회의개최 등)** ① 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②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1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72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분쟁 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 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 의결 등 인사 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3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74조(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장(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제 4 절 사무직원 및 조교

**제76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77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 일반직원의 근속 승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근속 승진에 관한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77조의 2(조교)** ①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임용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

② 조교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8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79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79조의 2(명예퇴직)**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에 관하여 제46조의 2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3.01.25)

**제80조(신분보장)** ①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81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둔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 5 절 행동강령

**제81조의 2(행동강령)** 건양중고등학교 교직원은 직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가치기준 및 행위기준에 있어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신설:2012.12.21)

## 제 7 장 직 제

### 제 1 절 법 인

**제82조(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법인사무국에는 국장·부국장을 둘 수 있으며, 국장·부국장은 차장이상으로 보한다.(개정: 2016.03.30)

② 법인사무국에는 행정팀, 기획팀, 법무실을 두며 각 팀장(실장)은 과장이상으로 보한다.(개정: 2016.04.29., 2017.06.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82조의 2(법인사업조직)** ①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업의 사무 및 관리를 위하여 법인사업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차장이상으로 보한다. 단, 업무상 필요할 경우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다.

② 법인사업본부에는 총무부와 사업부를 두며, 각 부장은 과장이상으로 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 2 절 건 양 대 학 교

**제83조(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부총장과 특정목적을 담당하는 부총장을 둘 수 있다.(개정:2017.03.28)

④ 부총장은 교육운영과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특정목적을 담당하는 부총장은 특정목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총장을 보좌하고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총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2017.03.28)

**제84조(단과대학장·부학장·학부(과)장)** ① 단과대학에 학장 및 부학장을 두고, 그 밑에 필요한 부장을 두고, 학부(과)에 학부(과)장을 둘 수 있으며, 의과대학장이 의과대학장을 겸직할 수 있다.(개정:2015.8.25)

② 단과대학에 학부(과)를 둘 수 있으며, 학장과 부학장, 학부(과)장, 각 부장은 전임교원 또는 초빙교원, 차장 이상으로 보한다.(개정:2015.8.25)

③ 학장과 부학장, 각 학부(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단과대학과 학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84조 2(대학원장)** ①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② 대학원장은 전임교원 또는 초빙교원으로 보한다.

③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84조의 4** (삭제:2015.8.25)

**제85조(행정기구)** ① 대학교 행정기구는 교육운영실, 교육지원실, 대외협력실, 비서실로 구분한다. 교육운영실에는 학사운영처(대전,논산), 학생처, 평생교육대학, 국제교육원을 둔다. 교육지원실에는 기획처, 인사처, 창의인재처, 학사지원처, 산학취업본부, 정보통신원, 명곡도서관을 둔다. (개정:2017.08.23)

② 전항의 각 행정기구에는 부서장을 두며,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장 또는 부처장을 둘 수 있다. 부서장 및 차장·부처장은 전임교원 또는 초빙교원, 과장이상으로 보한다. (신설: 2016.04.29)

③ 제1항의 각 행정기구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으며, 그 직제와 업무분장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04.29)

**제85조의 2(대학원)** ① 대학원에 각 대학원의 업무를 총괄 할 교학팀을 두며, 교학총괄 팀장은 전임교원 또는 초빙교원, 계장 이상으로 보한다.

**제85조의 3** (삭제:2015.8.25)

**제86조(부설연구소)** ① 대학교에 필요한 연구소를 두며, 각 연구소의 장은 전임강사 이상 교원 또는 과장 이상으로 보한다.

② 연구소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연구소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

**제87조(건양대학교 의료원)** ①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대학, 의과학대학,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료원을 둔다.(개정: 2016.03.30)

② 의료원에 의료원장을 두며 의료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의료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단, 의료원에 행정원장을 둘 수 있으며, 업무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의료원에 기획조정실, 적정진료관리실, 홍보실을 둔다.

(개정:2013.12.26.,2016.04.29)

④ 전항의 각 실에는 부서장을 두며,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실장을 둘 수 있다. 부서장 및 부실장은 전임교원 또는 초빙교원, 과장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16.04.29)

⑤ 각 실에는 필요한 팀을 둘 수 있으며, 그 직제와 업무 분장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04.29)

**제88조(건양대학교 병원)** ① 대학교병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병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병원에 진료 및 행정을 담당할 3인 이내의 부원장을 둘 수 있고, 담당할 업무수행을 위해 실, 부, 과와 팀을 둘 수 있다.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⑨ 삭제

⑩ 삭제

⑪ 삭제

⑫ 병원에 교육·연구 및 진료를 위하여 별정직을 두고, 전임의사와 전공의를 둔다.

⑬ 삭제

⑭ 병원 일반직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89조(건양대학교 부여병원)** ① 건양대학교 부여병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병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병원에 진료부와 행정부를 두며, 진료부에는 진료 각과와 진료 지원부서를

둔다.

③ 병원 일반직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 제 3 절 건양사이버대학교

**제90조(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고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총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1조(학부(과)장)**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학부와 학과를 두며, 학부(과)에는 학부(과)장을 둔다.

② 학부(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부와 학과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92조(행정기구)** ① 대학교 행정기구로 교학처, 기획처, 대외협력처를 둔다.

(개정:2016.04.29)

② 전항의 각 행정기구에 부서장을 두며,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다. 부서장 및 부처장은 전임교원 또는 초빙교원, 과장이상으로 보한다.

(신설:2016.04.29)

③ 제1항의 각 행정기구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으며, 그 직제와 업무분장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2016.04.29)

**제93조(부설연구소)** ① 대학교에 필요한 연구소를 두며, 연구소의 장은 전임교원 또는 과장이상으로 보한다.

② 연구소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연구소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업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 제 4 절 고 등 학 교

**제94조(교장 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5조(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계장이상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 5 절 중 학교

**제96조(교장 등)** ① 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7조(하부조직)** 중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주임이상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절 유치원

**제98조(원장 등)** ① 유치원에 원장1인을 두고 원감1인을 둘 수 있다. (신설 2017.6.28.)

②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원아를 지도하고 유치원을 대표한다. (신설 2017.6.28.)

③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9조(하부조직)** 유치원에는 행정실을 두며,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6.28.)

## 제 7 절 학교운영위원회

**제100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중·고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1조(교원위원 선출)**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의한 교원위원 선출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 정수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한다.

② 추천의 방법 등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02조(준용규정 등)** ①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충청남도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19조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이 경우 심의는 자문으로 한다. (개정: 2016.03.30)

②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03조(학교체육소위원회 설치)** ①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에 의거 중·고등학교에 학교체육소위원회(이하 “체육소위원회”라 한다.)를 학교 운영위원회 산하에 구성하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3.06.27)

## 제 8 절 정 원

**제104조(정원)** 법인과 각급 학교, 의료원 및 병원에 두는 일반직 정원은 각각 별표 1, 2, 3, 4, 5, 6, 7, 8, 9, 10와 같다.(개정 2017.6.28.)

## 제 9 절 보 칙

**제105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해야 할 사항은 국내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106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07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제108조(정관효력)** 이 정관은 등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7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75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7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임원의 종류와 임기는 만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인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0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2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임원의 종류와 임기는 임기 만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에 정관에 의하여 임기 없이 임명된 학교장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가산하고, 임기가 정해진 학교장의 임기는 임기 만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 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 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 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9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 제1호, 제43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 제3관, 제50조 제3호, 제51조 제4항, 제7장 제2절, 제89조 별표 2는 건양대학 개교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 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 에 대한 현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 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제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39조 2의 개정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되는 자부터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해 2002년 1월 1일 재직 중인 대학교원으로서 임용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자의 근무기간은 정관 제39조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0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임용된 학교의 장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정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초과 이사는 임기 만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규정) 인사위원회의 구성인원 중 이정관 시행일 현재 임명된 인사위원회 위원은 본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설치학교)의 개정사항은 도교육청 인가 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정관 이전에 취임한 감사는 종전의 임기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개정:2014.03.31)

**법인 일반직원 정원**

<b>총 계</b>	<b>17 명</b>
일반직계	17 명
2 급 (부 장)	1 명
3 급 (차 장)	2 명
4 급 (과 장)	1 명
5 급 (과 장)	1 명
6 급 (계 장)	2 명
7 급 (주 임)	2 명
8 급 (직 원)	4 명
9 급 (직 원)	4 명

기능직계

(폐지: 2014.03.31)

법인 사업본부 일반직원 정원

<b>총 계</b>	<b>15 명</b>
일반직계	11 명
2 급 (부 장)	1 명
3 급 (차 장)	2 명
4 급 (과 장)	1 명
5 급 (과 장)	1 명
6 급 (계 장)	2 명
7 급 (주 임)	2 명
8 급 (직 원)	2 명
9 급 (직 원)	0 명
기술직계	4 명
7급(주 임)	1 명
8급(직 원)	1 명
9급(직 원)	2 명

건양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b>총 계</b>	<b>173명</b>
일반직계	140 명
2 급 (부 장)	3 명
3 급 (차 장)	4 명
4 급 (과 장)	9 명
5 급 (과 장)	16 명
6 급 (계 장)	23 명
7 급 (주 임)	25 명
8 급 (직 원)	30 명
9 급 (직 원)	30 명
기술직계	33 명
4 급 (과 장)	3 명
5 급 (과 장)	4 명
6 급 (계 장)	6 명
7 급 (주 임)	8 명
8 급 (직 원)	8 명
9 급 (직 원)	4 명
기능직계	(폐지:2014.03.31)

(별 표 4) (개정:2014.03.31)

**건양고등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8 명
일반직계	8 명
5 급	1 명
(지방교육행정사무관)	
6 급	1 명
(지방교육행정주사)	
7급	1 명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지방교육사무운영주사보	1 명
지방교육시설관리주사보	
8 급	2 명
(지방교육행정서기	
지방교육사무운영서기	
지방교육시설관리서기)	
9 급	3 명
(지방교육행정서기보	
지방교육사무운영서기보	
지방교육시설관리서기보)	
기능직계	(폐지:2014.03.31)

(별 표 5) (개정:2014.03.31)

**건양중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6 명
일반직계	6 명
6 급	1 명
(지방교육행정주사)	
7급	1 명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지방교육사무운영주사보	
지방교육시설관리주사보	
8 급	1 명
(지방교육행정서기	
지방교육사무운영서기	
지방교육시설관리서기)	
9 급	3 명
(지방교육행정서기보	
지방교육사무운영서기보	
지방교육시설관리서기보)	
기능직계	(폐지:2014.03.31)

(별 표 6)

**건양대학교 의료원 일반직원 정원**

<b>총 계</b>	<b>21명</b>
<b>일반직계</b>	<b>15명</b>
2급 (부 장)	1명
3급 (차 장)	0명
4급 (과 장)	4명
5급 (과 장)	0명
6급 (계 장)	0명
7급 (주 임)	8명
8급 (직 원)	1명
9급 (직 원)	1명
<b>기술직계</b>	<b>6명</b>
4급 (과 장)	1명
5급 (과 장)	0명
6급 (계 장)	0명
7급 (주 임)	5명
8급 (직 원)	0명
9급 (직 원)	0명

(별 표 7) (개정:2014.03.31)

**건양대학교병원 일반직원 정원**

<b>총 계</b>	<b>1,156명</b>
<b>별정직계</b>	<b>172명</b>
전임의 5급	26명
전공의 6급(레지던트)	103명
전공의 7급(인턴)	43명
<b>일반직계</b>	<b>704명</b>
2급 (부 장)	2명
3급 (차 장)	3명
4급 (과 장)	10명
5급 (과 장)	28명
6급 (계 장)	35명
7급 (주 임)	52명
8급 (직 원)	333명
9급 (직 원)	241명
<b>기술직계</b>	<b>280명</b>
4급 (과 장)	5명
5급 (과 장)	11명
6급 (계 장)	22명
7급 (주 임)	55명
8급 (직 원)	92명
9급 (직 원)	95명

기능직계

(페이지:2014.03.31)

건양대학교 부여병원 일반직원 정원

<b>총 계</b>	<b>70 명</b>
별정직계	7 명
임상강사 5급(전문의)	7 명
<b>일반직계</b>	<b>50 명</b>
3 급 (차 장)	1 명
4 급 (과 장)	2 명
5 급 (과 장)	4 명
6 급 (계 장)	5 명
7 급 (주 임)	8 명
8 급 (직 원)	11 명
9 급 (직 원)	19 명
<b>기술직계</b>	<b>13 명</b>
6 급 (계 장)	1 명
7 급 (주 임)	2 명
8 급 (직 원)	4 명
9 급 (직 원)	6 명

건양사이버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b>총 계</b>	<b>50 명</b>
일반직계	32 명
3 급 (차 장)	1 명
4 급 (과 장)	2 명
5 급 (과 장)	3 명
6 급 (계 장)	4 명
7 급 (주 임)	5 명
8 급 (직 원)	6 명
9 급 (직 원)	11 명
기술직계	18 명
5 급 (과 장)	1 명
6 급 (계 장)	2 명
7 급 (주 임)	3 명
8 급 (직 원)	4 명
9 급 (직 원)	8 명

(별 표 10)

건양대학교 부속유치원 일반직원 정원

<u>총 계</u>	<u>2 명</u>
9 급 (직 원) ~ 6급 (계 장)	2 명